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



구 미 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 노후되어 휴관 중인 시립민속관을 정비·이전하여, 구미시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교육전시공간 조성
- 구미시의 향토 역사문화가치를 재발견하고 체험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 갈증 해소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구미시 인의동 115번지 등 14필지
- 대 상 : 토지 19,956m² ※ 국·사유지 14필지 매입
건물 연면적 861.77m²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도비 4,500, 시비 7,500)
- 기준가격 : 8,711백만원
 - 토 지 : 711백만원(2021.1.1. 기준 공시지가)
 - 건 물 : 8,000백만원(시설비)

재 산	소재지	수량 (㎡)	추정가액 (백만원)	비고
동 헌	인의동 115 일원	82.80	1,757	부지 조성, 조경 포함
내 삼 문	〃	17.28	367	
외 문 루	〃	34.56	733	
시립민속관	〃	584.09	4,131	
관 리 동	〃	143.04	1,012	
합 계		861.77	8,000	

○ 사업기간 : 2019년 ~ 2025년

○ 사업규모 : 동헌, 외문루, 시립민속관, 광장 및 편의시설 등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15건	20,817.77	8,711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14건	19,956	711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건	861.77	8,000
처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매각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고
	재산구분	소 재 지	수 량					
계		15건	20,817.77	8,711				
취득	토지 (14건)	인의동 114	1,394	135	2021~ 2023년	천생역사문화 공원 조성사업	김*연	매입
		인의동 115	2,754	97	"	"	김*홍 외 3명	
		인의동 116	1,917	72	"	"	김*규	
		인의동 117	4,337	167	"	"	한*희	
		인의동 118	189	7	"	"	한*호	
		인의동 120	282	11	"	"	한*동	
		인의동 124-2	1,389	49	"	"	한*동	
		인의동 125	66	1	"	"	한*호	
		인의동 126-1	2,283	80	"	"	홍*진	
		인의동 126-2	324	6	"	"	이*희	
		인의동 126-3	914	16	"	"	이*희	
		인의동 127	553	19	"	"	신*애	
		인의동 152-2	1,355	50	"	"	한*호	
		인의동 787	2,199	-	"	"	농림축산 식품부	
	건물 (1건)	인의동 115 외	861.77	8,000	"	"	구미시	신축

위 치 도

□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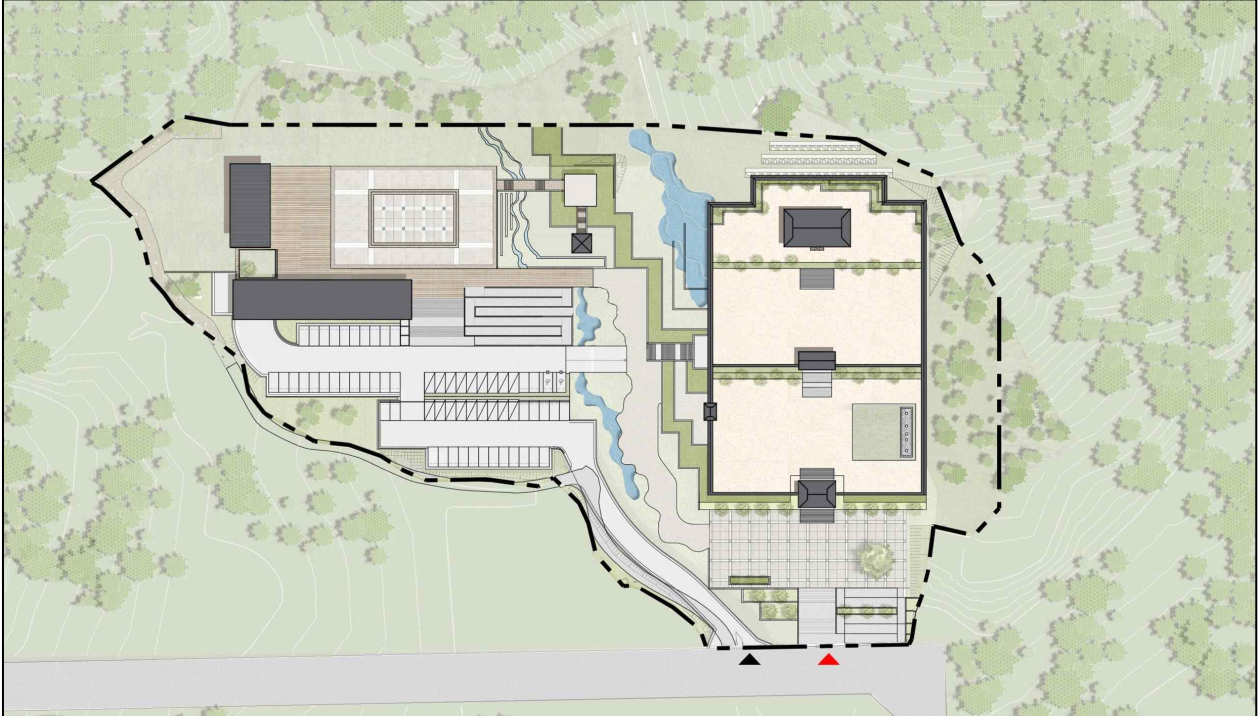
○ 소재지 : 구미시 인의동 115번지 일원



The map displays a central area shaded in yellow, representing the '국유지' (National Land). This area is surrounded by various land parcels, some of which are labeled with numbers 1 through 14. The map also shows a network of roads and a contour line at 1000m. A legend in the bottom right corner identifies the yellow shading as '국유지' (National Land) and the white areas as '사유지' (Private Land). A scale bar at the bottom left indicates a distance of 100m, and a north arrow is positioned above it. The map is titled '편입양지도' (Map of Inclusion Area) in the top right corner.

배 치 도 및 조 감 도

□ 배 치 도 (안)



□ 조 감 도(안)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② ~ 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지 영 목
	담 당	박 정 희
	담 당 자	유 동 선 (480-5072)